

동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9판)(‘21.11.15. 시행)을 오미크론 대책(‘22.1.14)에 따라 수정·보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10판)(‘22.2.10. 시행)을 기본으로 작성한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각 개별 시설의 사정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10판)

2022. 2.



보건복지부

목 차

I. 개 요	1
I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3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3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5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6
4. 시설 거주자의 면회·외출·외박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8
5. 접촉의 최소화	9
6. 시설 휴관(원) 시 조치사항	9
7. 의심·확진자 발견 시 조치사항	10
8. 행정사항	12
III. 지자체 협조사항	14
IV.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등 업무연속성 계획 (BCP) 작성 가이드라인	15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심각단계 행동수칙	27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수칙	29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관리자 방역수칙	32
4.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33
5.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36
6. 사회복지시설 소독방법	38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환기 가이드라인	46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대상	52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보	53
10.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간격 단축 안내	54
11. 예방접종 유효기간 및 이력 확인 방법	55
12. 자가검사 대응 및 조치 방안	59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검사 관련 안내 사항	61
14.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안내	62
15.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내용	63
16.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및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64

▷ 서식 ◁

1. (서식1-1) 시설 거주자(종사자) 모니터링(임상증상기록지)	64
2. (서식1-2) 시설 종사자 모니터링(임상증상기록지)	65
3. (서식2) 접촉자 거주자(종사자) 모니터링(임상증상기록지)	66
4. (서식3-1)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67
5. (서식3-2)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68
6. (서식4)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체크리스트	69
7. (서식5)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모니터링 점검표	70
8. (서식6) 소독 실시 대장 양식	71
9. (서식7) 환기 실시 대장 양식	72

▷ 참고 ◁

1. 보건복지 소관 사회복지시설 세부 분류	73
-------------------------------	----

I 개 요

1. 목 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11.1)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방역관리 방향 제시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재정비하여 피해 최소화 도모

*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 **오미크론 확산** 전망에 따른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예방 중심의**
 방역대응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22.1.14)

□ 본 지침은 시설 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시설 운영 등을 제시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성

- **증상** :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하며, 일부 환자는 매우 경한 증상을 보이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있으며, 그 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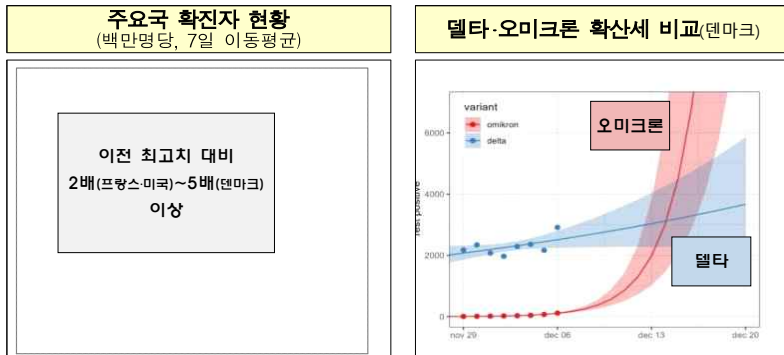
● 전파 방법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 **표면접촉** :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악수 등) 또는 매개체(오염된 물품이나 표면)를 만진 후, 손을 씻기 전 눈, 코, 입 등을 만짐으로 바이러스 전파
- ▶ **에어로졸 생성 기술** :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개방된 객담 흡입, 흡입기 등
- ▶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 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노래방, 커피숍, 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 감염자와 같이 있거나 감염자가 떠난 즉시 그 밀폐공간을 방문한 경우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및 영향력

- (전파력) 델타 대비 전파력 2~3배 높고, 확진자 더블링에 2일 이내 소요(영국)



- (백신효과) 면역회피로 돌파감염 위험 증가, 중증·사망예방 효과는 소폭 감소
- 3차 접종시 감염예방 효과 확인되나 접종 3개월 후 뚜렷하게 감소
- (영향력) 높은 전파력이 낮은 중증도를 상쇄하며, 단기간에 대규모 급증(surge) 가능
- 방역·의료 대응에 심각한 부담 초래, 새로운 위기 국면 돌입 가능 ⇒ 환자 급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비상 의료대응 체계를 마련 필요
- 확진자접촉자 증가에 따른 대규모 격리 및 치료로 인한 사회 필수기능 유지 및 사업장 운영 지장 초래 ⇒ 의료·교육·돌봄·소방·치안·교통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공공업무의 중단과 국가 경제활동의 막대한 차질 발생 우려되므로 각 분야별 철저한 대응계획 수립 필요

2. 기본방향

- ①철저한 방역 조치 하,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정상 운영 원칙,
②지역 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 범위 조정
- *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
-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시설운영 정상화, 미접종 종사자 등 관리 강화**

- 종사자·미접종 입소자 등 주기적 선제검사 의무화
- 신규 입소자·이용자 진단검사 후 입소·이용

-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BCP) 수립·이행(22.2월)

I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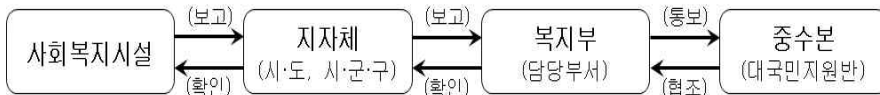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관리체계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 (관리체계)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지정하여** 근무자 등 출입자 관리, 시설·환경관리,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체계를 유지토록 함
 - * 방역관리자(시설내 방역관리 및 신고접수, 시설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등
 - ** 시설 내 방역관리자는 YOUTUBE에 “방역관리자” 검색 후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계정에서 방역관리자 교육콘텐츠를 통하여 역할 숙지
 - 종사자·입소자·이용자·방문자 등 **명단 작성·보관**
 - * 간편 전화(안심콜) 및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권고)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선별진료소-의료기관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체계**
 - (대응 체계) 복지부(중수본 및 사업부서)와 지자체,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등 지정

* 감염관리책임자 :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시설 내 방역물품 비치 파악 등 수행

** 시설 직원을 방역관리자로 배치하되, 직원이 없는 경우 이용자가 방역관리자로 활동 가능

- **감염자 발생, 방역수칙 위반 등 특이사항 및 방역조치 점검결과**를 시설은 지자체에 보고, **지자체는 사실관계 조사 후 복지부 보고**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체계 >



○ (방역조치 점검)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 지자체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자·종사자 **감염병 모니터링 및 방역 수칙 교육 결과***를 소관 **지자체(시·군·구)에 보고****

* 종사자 대상 방역수칙 준수 교육 실시 결과 포함(지침 시행시 1회, 이후 신규 직원 대상)

** 지자체에 따라 보고의 형식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반드시 소관 시설 전체에 지침을 포함하여 공문 등 방법으로 안내할 것

- (지자체) **시설 운영 재개 또는 운영 범위·대상이 확대될 경우** 즉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점검한 후 운영 재개**

○ (운영 재개 등) 운영 중지 시설의 운영 재개, 사전 조치 신속 시행(지자체 시설)

①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시행, ② 시설운영수칙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③ 방역관련 물품 확보, ④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실시 등

-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지역별·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시설 운영 여부 및 서비스 범위·대상 등 결정**

* 지역의 확산 추세 및 의료자원, 시설 주변의 확진자 현황 및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설(서비스) 특성에 맞게 세부사항 결정

- 시설 소재지 지자체와 법인 소재지 지자체는 **협력·협조 체계를 구축·유지하여** 지자체가 타 행정구역에 설치·운영 중인 노인요양 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이 제외되지 않도록 **합동점검 등 중점관리**

* 지자체간 역할정립에 대해서 양 자치단체 협의사항을 우선하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코로나-19 감염병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 소재지 지자체에서 관리할 것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시설 입소자·이용자,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 코로나19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 손 세척제(비누, 알콜 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관리
- 손씻기 후에는 종이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서식 6, 7)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일 2회 이상)
- * 문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일 3회 이상 자주, 매회 10분 이상)
- * 환기는 상시로 하되, 에어컨 가동 시, 2시간마다 1회 이상 권고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에어컨'
- 마스크 착용, 체온계, 손 소독제 등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을 충분히 비치
- 오미크론 감염 예방을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KF94·KF80 등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새로운 생활 속 방역수칙 (방대본, '22.1.24)	
1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3밀 환경),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 등)에서는 반드시 보건용마스크 착용하기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4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가정 내 문고리, 스위치, 전화기)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6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만나지 않기

<상황별 권고 마스크(방대본, '22.1.24)>

상황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KF 94	KF 80		
의료 관련 상황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필수	-	-	-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우선) 권장		사용 가능	
생활 방역 상황	· 3밀시설(밀집·밀접·밀폐) 또는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방문	(우선) 권장		사용 가능	
	· 타인 접촉이 잦은 직업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실외에서 2m(최소1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권장			

*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폐질환, 암, 뇌혈관질환, 면역저하, 비만, 천식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 안내

○ 외부인 출입통제(출입자 명부작성)

- 단, 시설·장비 보수, 응급환자 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1회만 출입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등 책임자 판단하에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착용 및 증상확인)하여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

□ 시설 입소자·이용자·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서식 1)

⇒ 시설 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 및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

- (1)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 방문자는 출입 금지
- (2)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¹⁾⁺⁽²⁾: 유증상자 **코로나19행동수칙** 참조,
- (3)**입소자는 별도 공간에 격리 조치**

□ 다음과 같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 중단할 것**

-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즉시 검사받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고 출근 중지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 ② **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해외입국자 관리 방안 및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름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10~3판),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제3판)」('21.9.24.)

- 시설 관리자는 상기 ①·②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관(이용중단)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예시) 근로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어린이 등 : 결석 시 출석 인정

- 시설 관리자 등은 시설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하고 관리할 것

- 의심환자 발생 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실을 시설 내 확보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4. 시설 거주자의 면회·외출·외박 및 프로그램 등 운영 관련

□ (면회) 접촉면회 금지, 비접촉 면회 실시로 시설 내 감염 위험 최소화 도모

○ 중증, 외상 등으로 비접촉 면회가 어려운 경우 영상면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면회 실시

○ 단, 입소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 긴급한 상황이라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자 또는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면회 가능

* KF94(또는 N95) 마스크+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시설에서 보호용구 착·탈의 방법 안내 필요

○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권고,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음료 제외), 발열 등 증상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 방역관리 실시

□ (외출·외박) 필수 병원 진료 외 원칙적 외출·외박 금지

○ 복귀 후 체온 측정, 호흡기 증상 확인 등 모니터링 지속

□ (프로그램 등 운영)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 운영

○ 접종완료자에 한하여 프로그램 참여 가능(외부강사 제공불가)

- 비교적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를 권장함

○ 마스크 착용, 프로그램 전후 환기·소독 실시, 사람 간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 실시

□ (이용시설 내 취식) 테이블 간 적정거리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

< 참고 : 증명서·확인서 별 유효기간 >

구분		유효기간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2차접종 후 14일~180일 ¹⁾ , 3차접종(부스터) ²⁾ 후 즉시
코로나19 음성(陰性, negative)확인	PCR 음성확인서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검사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코로나19 격리해제 확인서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
예외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단,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한 접종연기자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1)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는 유효기간 없음

2) 3차 접종(부스터) 완료자는 유효기간 없음

5. 접촉의 최소화

○ 시설 종사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 시설 내 종사자가 감염원이 되어, 이용자에게 전파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감염 관리에 철저

- 종사자 방역수칙 교육 및 사전에 숙지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종사자 간 식사, 모임, 회의 등을 할 때에도 개인방역수칙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출·퇴근 시간, 식사시간 교차 실시 *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

○ 좌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

6. 시설 휴관(원) 시 조치

□ 휴관(원) 시, 취약계층 긴급 돌봄서비스 지속 제공

* 시설별 긴급 돌봄서비스 방안(안부전화, 도시락 등) 마련, 시설 운영 중지 시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 조치

○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 대응지침」
(‘20. 2. 21. 既 배포) 및 시설별 개별지침 활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41(2020.02.21.) 既 시행

7. 의심·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

◇ (대응원칙) ①의심증상시 출근하지 않고 즉시 검사, ②신속한 접촉자 관리를 통해 추가전파 억제, ③상시 연락체계 유지

- 의심·확진자 발생 시 정부의 방역 대응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대응함
- 종사자는 의심증상 발생 시, 출근하지 않고 시설 내 감염병 관리자와 상담 등 시설 내 전파 사전 차단 조치 고려
 - ※ 관련 대응지침은 감염병 진행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지침 내용에 대한 숙지 필요 (질병관리청 누리집, <https://www.kdca.go.kr> 참조)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의심환자는 격리실에 격리,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 의심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는 보건용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의심)환자의 이송 이후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를 소독
- PCR 검사 수요 폭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RAT, rapid antigen test) 실시 검토 및 준비
 - * 신속항원검사(RAT, rapid antigen test) 결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입소자의 이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공간에서 보건소 담당자가 검체 채취함
- 환자발생 시 접촉자를 파악하고 시설 내 확진자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여 접촉자의 신속한 검사를 유도

- ※ 종사자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하여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 ※ 입소자 의심증상 발생 시 시설내 격리실에 격리,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며,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 ※ 확진환자 발생 시 확진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근무형태(개인별 혹은 부서별)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혼선 최소화
 - 사전에 지정된 임시격리장소 및 방역관리자(감염병관리자)를 활용하여 기관 내 감염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모든 직원에게 안내
 - 소독제 종류 및 소독범위, 환기 시간, 폐쇄 범위 등을 관련 대응지침에 근거하여 마련

○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서식 2)

- (의심)환자와 접촉한 종사자는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

< 변경된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준(질병관리청) >

구 분		현 행	조정안 (2.9. 시행)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일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미완료자) 10일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 [①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격리 기간	일반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미완료자) 7일 격리	
	재택치료자 동거인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 예방접종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또는 3차 접종자

※ 수동감시 : 감시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

※ (공통) 격리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 준수

* 격리·수동감시 해제 전 PCR 검사 실시하여 음성 확인시

** 마스크(KF94)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 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

<(예시)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요령>

※ 각 소관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대응 요령을 개정하고 공지할 수 있도록 조치

의심 환자	(접수)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종사자 또는 입소자 발생 시, 즉시 시설내 감염병 관리자 보건소에 전화 신고
	(검사) 기관 내 의사환자 발견 시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격리) 의사환자(종사자)는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결과는 시설내 감염병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의사환자(입주자)는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시설내 격리공간에 격리
	(접촉자) 의사환자와 개인보호구 없이 접촉한 사람은 의사환자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근 및 동반식사 지양
확진 환자	(소독) 의사환자가 머물렀던 공간은 마스크와 일회용장갑 등을 착용 후 알콜,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공지) 시설에서 확진환자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시설 내 모든 종사자 및 입소자에게 알려야 함(시설 내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노동자 포함)
	(접촉자 파악) 확진 환자와 접촉(마스크를 벗고 대화 혹은 식사)한 사람을 파악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재택근무, 격리 등 비상근무로 전환, 필요시 보건당국에 제출

8. 행정사항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업무배제 시 복무기준 관련

○ (유급휴가 처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하여 **치료·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20.1.30. 시달)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종사자가 **코로나19** 관련한 유급휴가로 대체 인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 시도의 파견인력 총괄부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양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에 대체인력 요청가능

붙임 16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및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감염 예방

① 예방접종 3차접종(부스터) 적극 참여하기

• 3차접종(부스터) 받기, 미접종자는 신속히 1차·2차 접종받기

②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쓰기

• 밀폐·밀집·밀접 환경,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KF80, KF94 마스크 권장
•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마스크 착용하기
• 하루 3번, 10분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③ 대면 접촉 줄이기

• 사적모임은 6인 이내, •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은 짧게, •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고위험군 조기진단·조기치료

④ (60세 이상, 고위험군) 의심증상시 신속하게 PCR 검사받고, 치료받기

선별진료소 PCR 검사, 확진 시 먹는 치료제 등 조기 치료받기

⑤ (일반) 의심증상시 신속환원검사 받고, 치료받기

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자가 신속환원검사(양성 시 PCR검사), 확진 시 재택치료



✓ 감염병 확산 시에도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핵심 업무 선정

✓ 핵심 업무 지속을 위한 인력(대체인력 투입 등)과
자원 운용(필수자원 및 현재 비축량 파악 등) 계획 마련

✓ 핵심 업무 담당자 결근(확진/격리) 대비하여 대체근무자 지정 및
우선순위 낮은 업무 축소 등 업무 조정 계획 마련

✓ 비상시 체계적인 대응 및 의사결정을 위한
비상조직 체계 구성 및 팀별·개인별 역할 규정

✓ 추가적인 인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 내 확산 방지 조치 사항 등 마련